

'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0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관련사항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주기 단축

현 재	변 경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제출기한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소규모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세무대리인

◆ 소규모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함
* 매월 말 상시 종업원 수 합계÷과세연도의 개월 수

▶ (공제금액) 소득자 인원수×200원
- 연간 최대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한도
- 연간 최소 1만원

▶ (적용기간) '24.1.1.~'25.12.31.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현 재	변 경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4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불분명 가산세 보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해당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5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4.1.1.~12.31.(소규모사업자는 '24.1.1. ~ '25.12.31.)기간 중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란?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주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관련사항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현 재	변 경
(신 설)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가산세 신설

▶ (가산세 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가산세율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0.125% ¹⁾	0.25%	0.25% ²⁾

1)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2)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적용시기)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4.1.1.~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4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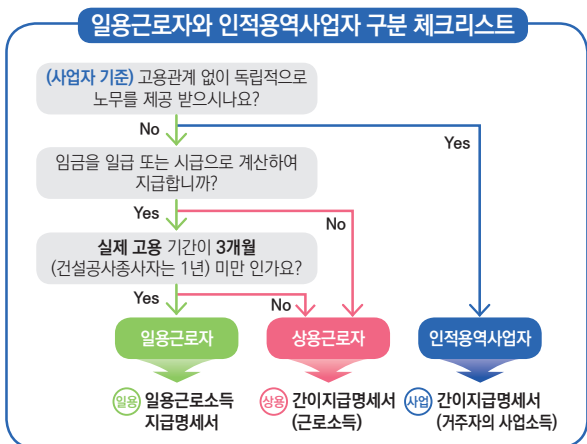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 6%] × 45%
- 간편법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 2.7%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일급여액 187천원 이하)

<계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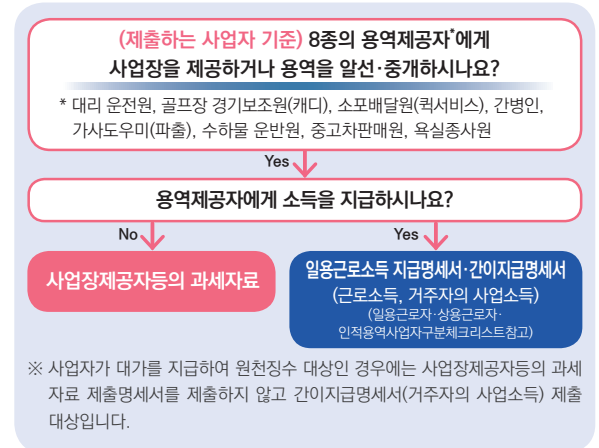
일용근로자 홍길동을 7일간 고용하고, 일급(과세대상 소득)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
3,000원 × 45% = 1,350원
1,350원 × 7일 = 9,450원
- 간편법 = (200,000원 - 150,000원) × 2.7% ×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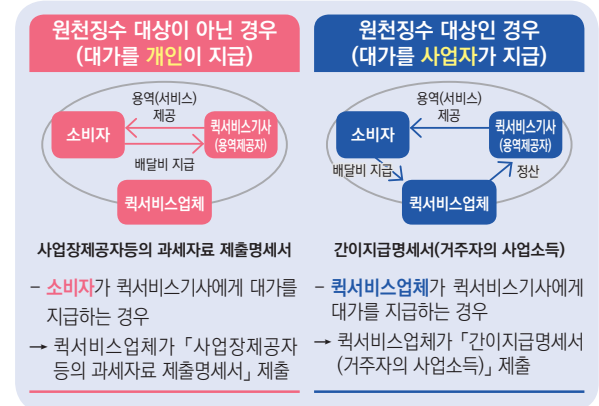
▶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 용역제공자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제출할 소득자료(예시)



홈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손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제출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검 색 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www.hometax.go.kr

국민의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소득파악 제대로!
복지사항 제로로!
국민행복 대대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소득자료 제출 안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실시간 소득파악(RTI)」이란?

▶ 20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제도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소득자료의 종류

소득자료 서식 명칭	제출주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반기

소득자 유형에 따른 소득자료

▶ 아래와 같이 영역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소득자 유형에 따라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다르니 소득자 유형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유형	제출할 소득자료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용역제공자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1 일용근로자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상용근로자란?

근무기간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의)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3 인적용역 사업자란?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계속 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인적용역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 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기본정보 입력 ▶ 상세내역 입력 ▶ 업종구분코드 검색

②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업종 검색

4 용역제공자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주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8개 업종 종사자를 말합니다.

◆ 8개 업종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육식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 '24.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이 자료제출 대상으로 추가됨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 소득자에게 임금·용역대가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 다만,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음

◆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관련 '22.1.1.(캐디 용역은 '22.7.1.)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제출 의무자에 해당함

소득자료 제출기한

소득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4.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현재는 반기별(1월, 7월) 제출)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용역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주의) 아래 소득자료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분

-소득자료 제출기한 적용사례-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3.11월	'23.12월	'24.1월말
	'23.11월	'24.02월	'24.1월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4.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23.07월	'23.08월	'24.1월말
	'24.01월	'24.01월	'24.2월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23.11월	'23.12월	'24.1월말
	'23.11월	'24.02월	'24.1월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그 외 사업소득	'23.11월	'23.12월	'24.1월말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3.11월	'24.02월	'24.3월말
	'23.11월	지급일은 제출 기한과 관계없음	'23.12월말

소득자료별 기재할 사항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
- ▶ 소득자 : 성명, 전화번호, 외국인여부, 주민등록번호
- ▶ 귀속연도,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최종근무일
- ▶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2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인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총 제출인원, 귀속연도, 귀속월
-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개시일,종료일,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3 간이지급명세서

- ▶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인원, 총지급액, 귀속연도, 지급월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사업)소득 내용 (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외국인, 거주자구분, 근무기간, 급여 등, 인정상여 (사업) 업종구분,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지급액, 세율, 소득세 등

소득자료 성실 제출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그 외 소득자료는 적용대상 아님)

▶ (적용요건) 제출기한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용역 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적용

▶ (적용기간) 2021.11.11.~2023.12.31. 기간 중 수입금액 (소득금액) 발생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분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
-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 연간 최소 1만원('23.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방법)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소득자료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불이익

▶ (가산세 대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소득자료	가산세율('21.7월~)		
	지연 제출 ¹⁾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1개월 이내)	0.25%	0.25% ²⁾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0.125% (3개월 이내)	0.25%	0.25%

- 1)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 2)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가산세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중복적용 대상임)
- '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2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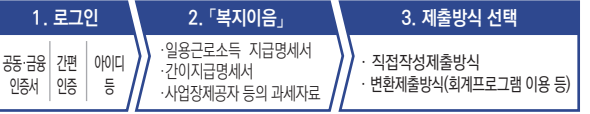
▶ (과태료 대상)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초과시 적용)

▶ (과태료 부과)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 전부 미제출 : 건별 20만원
-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 : 건별 10만원

소득자료 제출방법

▶ (간편제출)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제출



* 홈택스·손택스 제출 이용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 가능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방문 (서식 작성)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제24호서식(4)]
②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24호의4서식(1)]
③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24호의4서식(2)]
④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33호의2서식]